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 과징금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를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중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를 “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로 한다.

제5조를 제11조로 하고 제6조내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조(은영기금조성)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자동차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은영기금(이하 “은영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

제 9조(은영기금의 적립 및 관리) ① 도지사는 과징금 징수액중 당해연도 과징금운용 계획에 계상된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② 은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립한다.

③ 운영기금관리로 생기는 과실은 기금에 편입한다.

제10조(운영기금의 사용) 운영기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한다.

1. 벽지노선은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2.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3.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
4. 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충청북도운수사업체증서원교육시설설립및 운영기금적립조례를 폐지한다.
- ③ (적립금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충청북도운수사업체증서원교육시설설립및 운영기금적립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u> <u>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u>			<u>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u> <u>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및운영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징수하는 <u>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 (목적) <u>과징금의 부과, 징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신 설</u>)	제8조 (운영기금조성) 도지사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u>과징금(이하 "과징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자동차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운영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한다.</u>		
	(<u>신 설</u>)	제9조 (운영기금 적립 및 관리) ○ 도지사는 <u>과징금 징수액중 당해연도 과징금사용계획에 계상된 <u>수입액</u>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u>		

연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 5 조 (시행규칙) (생략)</p>	<p>② 운영기금은 별도 계좌를 설정하여 적 립한다.</p> <p>③ 운영기금관리로 생기는 과실은 기금 에 편입한다.</p> <p>제10조 (운영기금의 사용) 운영기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4항에 규정한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부조 드는 용자를 포함한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벽지노선은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u> 2. <u>교통안전시설의 확충</u> 3. <u>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확 충 및 운영</u> 4. <u>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 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 한 사업</u> <p>제11조 (시행규칙) (은행과 같은)</p>